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併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반”을 “토대”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탈모·상반신”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8쪽 중 제6쪽 중 “숫자로 병기한다”를 “숫자를 함께 적는다”로 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절토(切土) 또는 성토(盛土)하는”을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나목 중 “취토장(取土場)”을 “취토장(흙 채취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압출마감”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환토(換土)·객토(客土)”를 “환토(흙 바꾸기)·객토(새 흙 넣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정지”를 “정지(땅고르기)”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펜스”를 “울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음용수용”을 “먹는물용”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아목 중 “염해(鹽害)”를 “염해(鹽害: 염분 피해)”로 한다.

제5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를 말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권상장치와 기복장치”를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제2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허용공차”를 “허용오차”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절손”을 “파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33조의3제3항제4호 중 “부의한”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공차기준”을 “허용오차기준”으로 한다.

제7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인수증명서수불대장”을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탈모상반신”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탈모상반신”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한”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8 제2호아목 중 “조속기(調速機, governor)”를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만곡”을 “만곡(굽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가)1) 및 2)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1) (나)2) 중 “육안으로”를 “직접 눈으로”로 하며, 같은 호 아목(1) 중 “답판등”을 “발판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4) 중 “뿔등”을 “뿔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배토판”을 “배토판(排土板: 불도저 따위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지면을 고르거나 미는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뿔등”을 “뿔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꺽임”을 “꺾임”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9) 중 “육안검사”를 “맨눈검사”로 하며, 같은 목 (10)(가) 중 “권과방지장치”를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축중계(軸重計: 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를 “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1) 중 “구리스”를 “그리스(grease)”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본문 중 “속업쇼바”를 “쇼크 업소버(충격흡수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1) 중 “구리스”를 “그리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본문 중 “속업쇼바”를 “쇼크 업소버”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공차기준”을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목 외의 부분 중 “허용공차”를 “허용오차”로, “굴삭”을 각각 “굴착”으로 한다.

별표 13 중 “탁상드릴링머신”을 “탁상 드릴링머신(구멍 뚫는 기계)”으로, “정반”을 “정반(기계 부분품의 조립·검사 등에 사용되는 평면판)”으로 한다.

별표 13의2의 비고 중 “압력·굴삭력등”을 “압력·굴착력 등”으로 한다.

별표 13의3 제2호 중 “절취부”를 각각 “잘린 부분”으로, “육안조사”를 각각 “맨눈조사”로 한다.

별표 15 중 “탁상그라인더”를 “탁상 그라인더(연마기)”로, “토크렌치”를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공구)”로 한다.

별표 20 중 “양중작업”을 “양중작업(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한다.

별표 22의2 비고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축거”를 각각 “축간거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축거”를 각각 “축간거리”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제목 “폐기인수증명서수불대장”을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7서식 앞쪽 중 “계근중량”을 “측정무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굴삭볼”을 “절삭볼(Bowl & Cutting edge)”로 한다.

별지 제35호의8서식 중 “지불합니다”를 “지급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탈모상반신”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2쪽 중 2쪽 중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하지”를 각각 “다리”로 한다.

제6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축거(軸距)”를 “축간거리”로, “축거부터 제1축거, 제2축거, 제3축거”를 “축간거리부터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 제3축간거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성토(盛土), 정지(整地)”를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만곡”을 “만곡(굽음)”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붐”을 “붐(boom)”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중”을 “자체중량”으로, “이하이어야”를 “이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축거”를 “축간거리”로 한다.

제38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권상용(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이어로프, 지브의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이어로프 및 호스트로프	4.5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3.35

제38조의2제1항 중 “권상장치”를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내이어야”를 “이내여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기복장치”를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7조제2항 중 “노반”을 “지반”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93조의2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 후단 중 “공차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선정해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중 “외함은”을 “외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함간”을 “외부상자 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함”을 “외부상자”로 한다.

제114조의2제1호 중 “육안”을 “시각”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함”을 “외부상자”로 한다.

제119조제3항 본문 중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을 “가해지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함구조”를 “외부상자구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함은”을 “외부상자는”으로, “외함의”를 “외부상자의”로 한다.

제132조제7호 중 “조속기”를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139조제3항 중 “육안으로”를 “직접 눈으로”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이격”을 “벌어짐”으로 한다.

제149조의10제10호 중 “외함은”을 “외부상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허용 공차”를 “허용오차”로 한다.

별표 4의2 제6호 중 “도전부(導電部)는”을 “전기전도부는”으로, “도전

부와”를 “전기전도부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2) 중 “외함(外函)”을 “외부상자”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도전부”를 “전기전도부”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6의3 제3호라목 중 “육안으로”를 “눈으로”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 중 “회도계”를 “회도계[광원(光源) 단위 면적당 밝기 측정기]”로 한다.

제7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2조제4호 중 “굴토(掘土)·정지(整地)”를 “굴토(땅파기)·정지(땅고르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사목 중 “수불(受拂)”을 “출납”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를“(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평가방법란 중 “전차(前次)”를 “직전”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 및 나목1)가) 중 “노임단가”를 각각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7 제3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성토 및 절토”를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하고, 같

은 호 나목2) 중 “방음림”을 “방음숲”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절성토면”을 “절토·성토면”으로, “오탁방지막, 오일펜스”를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 비고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공란포함”을 “빈칸 포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공란으로”를 “빈칸으로”로, “(공란포함)”을 “(빈칸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공란포함)”을 “(빈칸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공란포함”을 “빈칸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제1호 중 “비계 :”를 “비계(飛階) :”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가목 중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적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4쪽 중 제2쪽 중 “쇼핑센터”를 “쇼핑센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2쪽 중 “쇼핑센터”를 “쇼핑센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중 “쇼핑센터”를 “쇼핑센터”로, “일괄지불방식”을 “일괄지급방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수장공사”를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대장수불부정리”를 “대장출납부정리”로 한다.

제10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를 “통재기둥(通材기둥: 이음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기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린벽(對隣壁)”을 “대린벽(對隣壁: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를 “위 인방(引枋: 문이나 창 의 아래나 위로 가로질러 설치하여, 상부 무게를 받치도록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해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자중”을 “자체중량”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제거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별표 8 중 “각각 장기응력에”를 “각각 장기응력(연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변형력)에”로 한다.

제11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차수설비”)를 “(물막이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수판(遮水板)”을 “물막이판”으로, “차수설비”를 “물막이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수설비”를 “물막이설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음용수용 배관설비”)를 “(먹는물용 배관설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용수용”을 “먹는물용”으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음용수용”을 “먹는물용”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배관하여야”를 “배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음용수용”을 “먹는물용”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선”을 “동선(銅線)”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서지보호장치(SPD)”를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과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가목1)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1) 및 2) 중 “대합실”을 각각 “대기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한다.

제12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다목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벽”을 “안쪽벽”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굴토공사”를 “굴토(땅파기)공사”로 한다.

제14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과목 중 “창호도”를 “창호도(창문 도면)”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7서식 중 “공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항측도엽번호”를 “항측도엽번호(항공기로 측량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3호라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가목 중 “방청”을 “방청(녹 방지)”으로 한다.

제15조(「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입회한 상태에서 하여야”를 “참관한 상태에서 해야”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개시대차대조표”를 “개시재무상태표”로, “대차

대조표 및”을 “재무상태표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나목1)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신고인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엽(圖葉)당”을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

라 분할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정부노임단가”를 “정부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8 제2호 표 중 “토털스테이션”을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자목 중 “원도”를 “원도(原圖)”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수수료란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노임”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별표 16 중 “노임”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첨부서류란의 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작성방법의 제1호 중 “일괄지불방식”을 “일괄지급방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7서식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노임단가”를 각각 “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17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문주(門柱)”를 “문주(문기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4) 중 “조속기”를 “조속기(과속조절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비고란 중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를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4) 중 “(PVC)”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18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참작하여야”를 “참작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1) 중 “수세”를 “수세(樹勢)”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용재림중”을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보상하여야”를 “보상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계산식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4 중 “노임”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제20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3쪽 중 제3쪽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불하여야”를 각각 “지급해야”로, “지불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21조(「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절토”를 “절토(땅깎기)”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사목 중 “통달거리”를 “도달거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중 “통달거리”를 “도달거리”로 한다.

별표 1 제14호라목1) 중 “시정”을 “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명멸(明滅)하는”을 “켜지고 꺼지는”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교통장주”를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

공을 도는 경로)”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 표 중 “배경휘도별”을 “배경휘도(배경의 단위 면적당 밝기 정도)별”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풍력터빈”을 “풍력터빈(풍력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중 “주간표지기는”을 “주간표지깃발은”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다) 중 “통달범위”를 “도달범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다) 및 라) 중 “통달범위”를 각각 “도달범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1)나)(1)(나) 중 “통달범위”를 “도달범위”로 하고, 같은 나) (2)(나) 중 “통달범위”를 각각 “도달범위”로 하며, 같은 (2) (다) 중 “통달범위”를 “도달범위”로, “통달구역”을 “도달구역”으로 하고, 같은 나) (3)(나) 및 (다) 중 “통달범위”를 각각 “도달범위”로 하며, 같은 목 2)가)(1) 중 “통달범위”를 “도달범위”로 하고, 같은 2) 나)(5)(가) 및 (나) 중 “통달범위”를 각각 “도달범위”로 하며, 같은 목 3)가) 중 “트랜스폰더 및”을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및”으로 하고, 같은 3) 나)(2) 및 (3) 중 “통달범위”를 각각 “도달범위”로 하며, 같은 호 마목2)가)(2)(가) 중 “통달범위”를 “도달범위”로 하고, 같은 2) 나)(8) 및 마)(2) 중 “통달범위”를 각각 “도달범위”로 하며, 같은 호 바목2)마) 중 “통달범위”를 “도달범위”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2)가) 중 “공대지”를 “공중 대 지상 간”으로, “모듈”을 “모듈(module: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독립장치나 구성요소)”로 하고, 같은 2) 다) 중 “공대지”를 “공중 대 지상 간”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1) 중 “공대지”를 “공중 대 지상 간”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 중 “통달거리”를 “도달거리”로 한다.

제22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평균휘도계(平均輝度計)”를 “평균휘도계[광원(光源) 단위 면적당 밝기의 평균 측정기]”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3) 중 “슬라롬(Slalom) 주행”을 “슬랄럼(Slalom: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과하는 주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4) 중 “슬라롬”을 “슬랄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나) 및 다) 중 “대합실”을 각각 “대기실”로 하고, 같은 호 차목1) 본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1) 중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6) 중 “안전펜스”를 각각 “안전울타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4)나) 중 “연석”을 “연석(경계석)”으로 하고, 같은 4) 다)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며, 같은 호 바목3) 중 “고회도”를 “고회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것)”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그림 1]의 <주석> 중 “공차”를 “허용오차”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를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로 하고, 같은 목 2) 중 “고원식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로 한다.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2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중 “양안(兩岸)”을 “양안(兩岸: 양쪽 기슭)”으로 한다.

제26조(「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7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를“(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 자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관계법령에 의한”을 “관계 법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를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土石)·사력(자갈)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8조(「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를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주(標柱)”를 “푯대”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표주”를 “푯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주”를 “푯대”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원표(道路元標)”를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책(簿冊)”을 “부책(簿冊: 내용을 자세히 적은 별도 문서나 장부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을 “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표주”를 각각 “푯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표주”를 “푯대”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지기”를 “표지깃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마) 중 “직상”을 “바로 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3)가) 중 “절토부 소단(小段)”을 “절토면(땅깎기를 한 면)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제목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을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주”를 “푯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접도구역의 표주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를 “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주”를 각각 “푯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0쪽 중 제3쪽 중 “주형”을 “주형(교량보, 거더)”으로, “교좌장치”를 “교량받침”으로 하고, 같은 서식 20쪽 중 제12쪽 중 “측구”를 “측구(길도랑)”로, “도로성토면”을 “도로 성토면(흙쌓기면)”으로 하며, 같은 서식 20쪽 중 제20쪽 중 “표주”를 “푯대”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최원축간거리”를 “가장 먼 축간거리”로 한다.

제2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토부, 절토부”를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대”를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도류화시설”을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로 한다.

제3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추월차로”를 “앞지르기차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차도에 모인 물을 차도 밖으로 빼내는 수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검지체계(檢知體系)”를 “검지체계(도로 일정 지점에서 차량의 존재나 교통량, 속도, 점유

을, 차량길이 등의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제31조(「도로표지규칙」의 개정)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병기하는”을 “함께 적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병기하지 아니할”을 “함께 적지 않을”로,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절토면”을 “절토면(땅짜기를 한 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홀기둥식, 곁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본문 중 “병기하고”를 “함께 표기하고”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병기할”을 “함께 적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병기하지”를 “함께 적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면계표지”를 “면경계표지”로, “군계표지”를 “군경계표지”로, “도계표지”를 “도경계표지”로, “복주식”을 각각 “곁기둥식”으로, “단주식”을 각각 “홀기둥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복주식”

을 각각 “곁기둥식”으로, “단주식”을 각각 “홀기둥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도계표지”를 “도경계표지”로, “복주식”을 각각 “곁기둥식”으로, “단주식”을 각각 “홀기둥식”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중 “단주식”을 “홀기둥식”으로, “복주식”을 각각 “곁기둥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면계표지”를 “면경계표지”로, “군계표지”를 “군경계표지”로, “도계표지”를 “도경계표지”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병기할”을 각각 “함께 적을”로, “단주식”을 “홀기둥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주식”을 각각 “홀기둥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도계표지”를 “도경계표지”로, “군계표지”를 “군경계표지”로, “복주식”을 “곁기둥식”으로, “병기할”을 “함께 적을”로, “요금지불”을 “요금 지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단주식”을 각각 “홀기둥식”으로, “복주식”을 각각 “곁기둥식”으로, “시계표지”를 “시경계표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 중 “병기하는”을 “함께 적는”으로,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복주식”을 “곁기둥식”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이격되어야”를 “간격을 유지해야”로, “시계표지”를 각각 “시경계표지”로, “도계”를 “도경계”로, “단주식”을 “홀기둥식”으로 한다.

제3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전단 중 “고분·성터·고옥”을 “옛무덤, 성터, 옛

집,”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표 1 제5호자목 중 “고분·성터·고옥”을 “옛무덤, 성터, 옛집”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절토 또는 성토”를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풍치”를 “경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다목 중 “여수로(餘水路)”를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로 한다.

제33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호 중 “대합실”을 각각 “대기실”로 한다.

제34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불투수면(不透水面)”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부교·잔교”를 “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잔교(구름다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4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를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을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4호 중 “이상을 이격하도록 할”을 “이상의 거리를 둘”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각각 “않도록”으로, “성토·절토”를 “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6조제2호마목 본문 중 “유로”를 “유로(流路)”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52조제7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3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36조(「도시철도건설규칙」의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설계축중”을 “설계축하중”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울타리

제37조(「도시철도운전규칙」의 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38조(「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개정) 도시철도채권 매

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외국인의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의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권종별”을 “채권 종류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권종별”을 “채권 종류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권종별”을 “채권 종류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권종별”을 “채권 종류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권종별”을 “채권 종류별”로 한다.

제3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2호 중 “조차(操車)장소”를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대금지불조건”을 “대금지급조건”으로 한다.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41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비고 중 “병기”를 “함께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  
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  
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

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란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제4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불액”을 각각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서  
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불액”을 각각 “지급액”으로, “해태한 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불액”을 각각 “지급액”으로 한다.

제4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중 “(뒷 쪽)”을 “(뒤 쪽)”으로, “외자”를 “외국자  
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내자”를 “내국자본”으로, “외자”를 “외국자  
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내자”를 “내국자본”으로, “외자”를 “외국자본”으

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중 “내자”를 “내국자본”으로,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44조(「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4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수문문비(水門門扉)”를 “수문의 문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수로(餘水路)”를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갹문문비(閘門門扉)”를 “갹문의 문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단서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주형”을 “주형(교량보, 거더)”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양안부”를 “양쪽 기슭부[양안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문비작동시설”을 “문짝작동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잔교”를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안벽”을 “안벽(부두벽)”으로 한다.

나. 갹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별표 5 제1호아목 중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를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수준(水準)”을 “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3쪽 중 “문비수”를 “문짝수”로 한다.

제46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나. 지주: 정주식 또는 측주식”을 “나. 기둥: 가운데기둥식 또는 옆기둥식”으로 한다.

제4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차) 중 “격벽시설”을 “간막이벽시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발착시간”을 “출발·도착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결행”을 각각 “미운행”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48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축거”를 “축간거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방책·구획선 기타”를 “울타리·구획선 또는 그 밖의”로, “구분하여야”를 “구분해야”로 한다.

제49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외자(外資)]”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50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의 개정)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입회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고는”을 “않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탁송 을”을 “탁송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약협(藥莢)”을 “화약통”으로 한다.

제5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갱정등록의 기재)”를“(경정등록의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정”을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등록공무원 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편철하여야”를 “편철해야”로, “철목간”을 “편철항목 사이”로, “부기하여야”를 “부기해야”로 한다.

제5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수불”을 “출납”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57조의9제1항제2호 중 “입회하”를 “참관하”로 한다.

제57조의15제1항제3호 중 “입회하”를 “참관하”로 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청(防淸)”을 “방청(녹 방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연료장치중 조속기”를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절손”을 “절손(완전 파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천공”을 “구멍”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비고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8) 중 “스테빌라이저”를 “스테빌라이저(좌우 자세 안정 보조장치)”로 한다.

별표 5의8 제1호나목(1) 및 (2) 본문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육안검사”를 “맨눈검사”로 하며, 같은 목 (3)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관능으로”를 각각 “감각기관으로”로,

“응력을”을 “응력(변형력)”으로, “열해(熱害)”를 “열해(熱害: 열로 인한 피해)”로, “관능 및”을 “감각기관 및”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 중 “속업쇼바”를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6) 중 “속업쇼바”를 각각 “쇼크업소버”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1)(나)2)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목 (2)(나)2) 중 “허용축중”을 각각 “허용축하중”으로 하며, 같은 (2) (사) 3) 중 “허용축중”을 “허용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목 (3)(나)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가)3) 및 4) 중 “허용축중”을 각각 “허용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 3) 본문 중 “허용축중”을 “허용축하중”으로 하며, 같은 (2) (아) 중 “허용축중”을 “허용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7) 중 “관능으로”를 “감각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호 마목(3) 중 “관능으로”를 “감각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호 바목(2) 중 “관능으로”를 “감각기관으로”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관능 또는”을 “감각기관 또는”으로, “관능(觀能)”을 “감각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8)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하며, 같은 목 9) 중 “속업쇼바”를 “쇼크업소버”로 하고, 같은 목 11)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8)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관능으로”를 “감각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목 9) 중 “속업쇼바”를 “쇼크업소버”로 하며, 같은 목 11)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하고, 같은 목 14) 중 “격벽시

설”을 각각 “칸막이벽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1) 중 “적용하여 통전”을 “적용하여 통전(通電)”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16)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6)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 중 “허용측중”을 각각 “허용측하중”으로, “자동차측중”을 “자동차 측하중”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 중 “오실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멀티미터”를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 중 “벨브시트그라인더”를 “벨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를 “구난차[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로 한다.

별표 21의3 중 “현가장치”를 각각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21의4 제2호나목(2) 중 “비산”을 “날림”으로 한다.

별표 22 중 “도막측정기”를 “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로, “멀티테스터”를 “전기회로시험기”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중 “전축중”을 각각 “전축하중”으로, “후축중”을 각각 “후축하중”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6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윤거”를 “윤거(좌우 바퀴 폭의 중심선 사이 거리)”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⑩ 종합판정 중 “관능·기능검사”를 “관능검사(官能検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기능검사”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의3서식 안내사항란 중 “지불합니다”를 “지급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중 “현가장치”를 “완충장치”로, “속업소버”를 “쇼크 업소버”로, “계근중량”을 “측정중량”으로 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54조(「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적(換積)물품”을 “환적물품(옮겨 실은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공구 기타”를 “공구, 그 밖의”  
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만재하고”를 “가득 채우고”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측중”을 각각 “측하중”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속기”를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절기를 말한다)”  
로, “하여야”를 “해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측중”을 각각 “측하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응력(應力)”을 “응  
력(변형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  
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  
할”을 “단락(斷絡)이 발생하지 않을”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4호 중 “휴즈”를 “퓨즈”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  
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  
고, 같은 호 단서 중 “육안”을 “맨눈”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를 “않는 재질  
의 칸막이벽으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  
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칸막이벽면적의 20퍼센트 이  
내로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를 “핀틀후크(pintle hook: 견  
인용 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락될”을 “단락(短絡)될”로 한다.

별표 1의2 I 제3호가목3)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목 4)  
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가) 중 “육안”을 “맨눈”  
으로 하고, 같은 표 II 제4호가목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4 중 “측중”을 각각 “측하중”으로 한다.

별표 5 제6호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나목2) 중 “외함”을 “겉상자”로 하며, 같은 표 주) 중 “도전부”를 “전기  
전도부”로 한다.

별표 5의17 제2호나목1)나)의 주) 중 “공차”를 “오차”로 하고, 같은 목 2)나)의 주) 중 “공차”를 “오차”로 한다.

별표 5의18 제2호가목의 주) 중 “공차”를 “오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주) 중 “공차”를 “오차”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주) 중 “공차”를 “오차”로 한다.

별표 5의2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격벽시설”을 각각 “칸막이벽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현가장치”를 각각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5의30 제2호가목8) 중 “힌지형”을 “힌지형(경첩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7) 및 8)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를 각각 “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 한다.

별표 5의31 제1호나목14)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6)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4호가목1)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의29 제3호의 4)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8호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7의3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4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5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7 제1호의 주) 중 “축거”를 “축간거리”로 한다.

별표 11의3 제1호의 기준란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기준란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한다.

별표 11의4 판정기준란 중 “현가장치”를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14 제1호라목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대퇴부)”로 한다.

별표 14의2 표 중 “치골유착하중”을 “두덩뼈(치골) 유착 하중”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나목 중 “내부격벽”을 “내부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14의6 제2호가목3) 본문 중 “경골”을 “정강이뼈(경골)”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경골”을 “정강이뼈”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본문 및 단서 중 “경골”을 각각 “정강이뼈”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경골”을 각각 “정강이뼈”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 중 “경골”을 “정강이뼈(경골)”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경골”을 “정강이뼈”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경골”을 “정강이뼈”로 한다.

별표 14의7 제1호가목4)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14의8 제1호가목6) 중 “치골유착”을 “두덩뼈 유착”으로 한다.

별표 24 제3호아목 표 외의 부분 중 “서지”를 “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 한다.

별표 27 제1호다목2) 전단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 본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별표 30의4 제1호가목9) 및 같은 목 11)나)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  
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3)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로 한다.

별표 30의7 제1호나목3)1) 본문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한다.  
별표 33 표 중 “윤거”를 “윤간거리”로, “축거”를 “축간거리”로, “축중”  
을 “축하중”으로한다.

제56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확폭”을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으로 한  
다.

제57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설치하여서는 아니”를 “설치해서는 안”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연도(沿道)”를 “연도(沿道: 옆길)”로,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 중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를 “연석(경  
계석)을 설치해야”로 한다.

제16조의17제1항 중 “육안”을 “맨눈”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

로 한다.

별표 1 제2호 검사기기의 항목란 중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  
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제5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가목4)가) 표 외의 부분 중 “방청·방부”를 “방청(녹 방  
지)·방부(부식 방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1) 중 “벡차프  
랜트”를 “배치 플랜트(batcher plant: 콘크리트 대량 제조 설비)”로 하  
며, 같은 가) (2) 중 “몰드”를 “몰드(주조)”로, “주형”을 “거푸집”으로  
하고, 같은 1) 나) 중 “증기양생”을 “증기양생(증기를 뿌리면서 굳히는  
일)”으로 하며, 같은 목 2)가)(3) 중 “스트롱후레임”을 “만능재료”로 하  
고, 같은 가) (6) 중 “실린더몰드”를 “실린더몰드(콘크리트의 압축 강  
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정 규격의 시험용 물체를 만드는 기구)”로 하  
며, 같은 가) (7) 중 “양생조”를 “양생조(養生槽: 굳기 전 콘크리트 보  
호·관리 탱크)”로 하며, 같은 호 나목2)가)(6) 중 “절건비중”을 “절건

비중(골재가 완전 건조 상태일 때의 비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다목 중 “절성토량”을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한 양)”으로, “비오통”을 “생물서식공간(비오통)”으로 한다.

제59조(「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비교 중 “잔고”를 각각 “잔액”으로 한다.

제60조(「주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슬라브”를 “슬래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창호도(창문 도면)

별표 2 제2호다목 중 “구거(溝渠)”를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별표 3 제4호다목 중 “(성토 및 절토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를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사목 중 “공청안테나”를 “공동수신안테나”로 한다.

제61조(「지도도식규칙」의 개정)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및 계곡선”을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굽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굽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굽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도엽명·도엽번호·인접지역 색인”을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번호, 인접지역색인”으로, “수정연 도”를 “수정연도”로 한다.

제62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계도”를 “교육”으로 한다.

제63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토털 스테이션측량”을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6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5조(「철도건설규칙」의 개정)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고정축거(固定軸距)”를 “고정축간거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6조(「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구분·계리하여 각 해당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해야”로 한다.

제67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13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85조의10제4호 중 “법률이”를 “법률에서”로, “호송·수용하거나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를 “호송·수용하거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4)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고, 같은 호 파목1) 중 “나안(裸眼)”을 “나안(맨눈)”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차목 중 “두개골”을 각각 “머리뼈”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나안(裸眼)”을 “나안”으로 한다.

별표 25 제1호가목 비고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기록되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2) 중 “오실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전압

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멀티테스터”를 “전기회로시험기”로 한다.

제68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69조(「철도차량운전규칙」의 개정)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중 “지도통신식”을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안”을 “맨눈”으로, “입환전호하여야”를 “입환전호해야”로 한다.

제70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71조(「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적용목적란 중 “토석”을 “토석(土石)”으로 한다.

별표 5의4 제3호마목1) 중 “렉산”을 “폴리카보네이트(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유포지”를 “유포지(油布紙)”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제당높이”를 “제방높이”로, “제당길이”를 “제방길이”로, “제당표구”를 “제방표고”로, “제당폭”을 “제방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제방고”를 “제방높이”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사수위”를 “사수위(死水位)”로, “문비”를 각각 “문 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몽리면적”을 “물 공급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의2서식 앞쪽 중 “표 치”를 “표 지”로 한다.

제72조(「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만곡부(彎曲部)”를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을 말한다)”로, “피하여야”를 “피해야”로 한다.

제73조(「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제4호 중 “하드우드 레이저 버닝”을 “하드우드 레이저 버닝(단단한 목재에 레이저로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방법)”으로 한다.

제75조(「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 수수료란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제76조(「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문(電文)”을 “전자통신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7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속속도”를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압(與壓)”을 “여압(기내 공기 압력

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후류(後流)”를 “후류(後流: 뒤쪽 바람)”로 한다.

제1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직교하는”을 “직각으로 교차하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터빈발동기”를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발동기”로 한다.

제68조제1호 중 “리깅(Rigging)”을 “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2호가목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뇌우”를 “뇌우(雷雨)”로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회피기동(escape manoeuvre)”을 “회피기동(escape manoeuvre: 장애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력·경로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0조 중 “메가폰”을 “손확성기(메가폰)”로 한다.

제138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항 운영 최저기상기준값[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제162조제3호 중 “추월하는”을 “앞지르기하는”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6호 중 “교통장주(交通長周)”를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여진”을 “정해진”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보하여야”를 “양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항(曳航)하는”을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양보하여야”를 “양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월해서는 아니”를 “앞지르기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67조제4항 전단 중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을 “앞지르기(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앞지르기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통과하여야”를 “통과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월하는”을 “앞지르기하는”으로, “추월당하는”을 각각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하여야”를 “이동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추월하려는”을 “앞지르기하려는”으로, “추월할”을 “앞지르기할”로 한다.

제17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예항줄”을 “예항줄(항공기 등을 끌고 비행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2조제1항 본문 중 “운고(Ceiling)”를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행하여야”를 “비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천음속(遷音速)”을 “천음속(遷音速: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직분리최저치”를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로, “운항하여서는 아니”를 “운항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공대지통신(空對地通信)”을 “공중 대 지상 통신”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0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공대지통신”을 “공중 대 지상 통신”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1조제3항 본문 중 “최저이륙기상치”를 “최저이륙기상기준값”으로, “이륙하여야”를 “이륙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82조제2항 전단 중 “전문(電文)”을 “전자통신문”으로 한다.

제18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시작하여서는 아니”를 “시작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가목 중 “운고(雲高)”를 “운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최저기상치”를 “최저기상기준값”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최저기상치는”을 각각 “최저기상기준값은”으로,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를 각각 “최저기상기준값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최저기상치”를 “최저기상기준값”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190조제1항 중 “공대지”를 “공중 대 지상”으로, “경청하여야”를 “경청해야”로 한다.

제203조제4호 중 “실속(失速)시켜”를 “실속시켜”로 한다.

제230조제5항 중 “항공기간 분리최저치”를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최소 분리 간격)”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저시정”을 “저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가 짧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84조제5항제1호 중 “완제(完製)형태”를 “완제기 형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완제형태”를 “완제기 형태”로 한다.

제2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하여야”를 “한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조종형비행기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중 “터빈블레이드”를 “터빈 블레이드(날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레이돔(radome)이”를 “레이더 안테나 덮개가”

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슬랫(slat)”을 “슬랫(slat: 양력 증대를 위해 비행기 주날개 앞부분에 설치되는 작은 날개)”으로, “윙렛(winglet)”을 “윙렛(winglet: 비행기 주날개 끝에 수직 또는 거의 수직으로 부착하는 작은 날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베인(vane)”을 “베인(vane: 공기의 흐름을 위한 작은 날개)”으로, “페어링(faring)”을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레이돔(radome)의 구멍을 포함한다]”를 “(레이더 안테나 덮개의 구멍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0호다목 단서 중 “Tail-Skid”를 “꼬리 스킴(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자가용 조종사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경량항공기 조종사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각각 “조종형비행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조종교육증명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타면조종형 경량비행기”를 “조종형 경량비행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자가용 조종사란 중 “공지통신”을 “공중 대 지상 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경량항공기 조종사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공지통신”을 “공중 대 지상 통신”으로 하며, 같은 목 2) 경량항공기 조종사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경량항공기 조종사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

행기”로, “공지통신”을 “공중 대 지상 통신”으로 하며, 같은 목 2) 경량항공기 조종사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두부·안면·경부·몸통 또는 사지”를 “머리·얼굴·목·몸통 또는 팔다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제1종란 중 “흉막 또는 종격”을 “가슴막(흉막) 또는 세로칸(종격)”으로, “병소”를 “병터(아픈 곳)”로, “기흉”을 “기흉(공기가슴증)”으로 하며, 같은 호 제2종란 중 “흉막 또는 종격”을 “가슴막 또는 세로칸”으로, “병소”를 “병터”로 하고, 같은 호 제3종란 중 “흉막 또는 종격”을 “가슴막 또는 세로칸”으로, “병소”를 “병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아목 중 “심막”을 “심장막”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임파선 종대”를 “림프절 비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나목 중 “두부외상”을 각각 “머리외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사지”를 각각 “팔다리”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신적출술”을 각각 “신장절제”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다목 중 “안저(眼底) 또는 시로(視路)”를 “안저(눈바닥) 또는 시각경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제1종란 중 “고막 천공”을 “고막천공(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일)”으로, “이관기능”을 “귀관기능(이관기능)”으로, “비공”을 각각 “콧구멍”으로, “부비동”을 “부비동(코결굴)”으로 하며, 같은 호 제2종란 중 “고막 천공”을 “고막천공”으로, “이관기능”을 “귀관기능”으로, “비공”을 “콧구멍”으로 하며, 같은 호 제3종란 중 “비공”을 “콧구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제1종란의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표”를 “시표(시력검사용 표지)”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나

목2) 중 “어음(語音)”을 “말소리”로 한다.

별표 12 제8호다목2)다)(2) 중 “공지통신”을 “공중 대 지상 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다목2) 1. 기초금속가공실기란 중 “피혁”을 “가죽”으로 하며, 같은 2) 4. 발동기실기란 중 “(초음파검사, 형광침투검사, 와전류검사, 자분탐상검사)”를 “[초음파검사, 형광침투검사, 와전류검사(와전류를 이용한 결함 검사), 자분탐상검사(자기를 이용한 결함 검사)]”로 하고, 같은 2) 7. 항공전기·전자·계기실기(기본)란 중 “멀티미터”를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가목2) 구분란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한다.

별표 13 제2호 중 “타진기”를 “타진기(두드려 진단하는 기구)”로, “이비경”을 “이비경(귀·코 검사 거울)”으로, “이관검사기”를 “귀관검사기(이관검사기)”로 한다.

별표 15 제1호마목2)가) 중 “안전강착거리”를 “안전착륙거리”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메가폰을”을 “손확성기를”로, “메가폰의”를 “손확성기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나목4) 중 “안면”을 “얼굴”로 하고, 같은 호 다목1)사) 중 “카테터”를 “도관(카테터)”으로 하며, 같은 1) 더) 중 “카테터”를 “도관”으로, “캐놀러”를 “삽입관”으로 하고, 같은 1) 서) 중 “bag-valve 마스크”를 “백 밸브 마스크(bag-valve mask: 자동 팽창 환기 마스크)”로 한다.

별표 16 비고 중 “자이로식 계기”를 “자이로식 계기(회전축이 수평 위

치로 유지되어 항공기 선회나 자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 위치, 수평 상태 등을 표시하는 기기)”로 한다.

별표 22 제4호가목 중 “대수속력(Making way)”을 “대수속력(Making way: 항공기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기·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항공기의 관성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 중 “우세시정(prevaling visibility)”을 “우세시정(prevaling visibility: 평평한 지역의 절반 이상의 범위에서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으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 후단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별표 26 제6호가목4)의 12. 고임목 제거 중 “초크를”을 “바퀴 고정 받침목을”로 한다.

별표 27 제2호 중 “콥법 테스터(Cobb Method Tester)”를 “코브법 테스터(Cobb Method Tester: 종이 또는 판지의 물 흡수도 시험기)”로 한다.

별표 35 제2호가목32) 중 “공수비행”을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으로 하고, 같은 목 41) 중 “시한성”을 “사용기한이 정해진(시한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92) 중 “CFIT”를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 충돌사고(CFIT)”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중 “Performance Data(Airport Analysis Chart, RTOLW Chart, T/L Chart)”를 “성능자료(Performance Data)[공항 분석 일람표

(Airport Analysis Chart), 활주로 이착륙 하중 일람표(RTOLW Chart), 전이고도 일람표(T/L Chart)]로, “Performance data가”를 “성능자료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24) 중 “기상치(氣象値)를”을 “기상기준값을”로 하고, 같은 목 25) 중 “최저기상치”를 “최저기상기준값”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13) 중 “최저기상치를”을 “최저기상기준값을”로 한다.

별표 37 제3호바목 및 제4호라목 중 “시한성”을 각각 “사용기한이 정해진(시한성)”으로 한다.

별표 41 제25호 중 “패스너(Fastener)”를 “파스너(Fastener: 잠금장치)”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추가발급 선택사항란 중 “PVC”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중 “전회검사”를 “직전 검사”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알러지”를 각각 “알레르기”로, “두부외상”을 “머리외상”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69) 원거리시력란 중 “나안”을 “나안(맨눈)”으로 하고, 같은 쪽 85) 진찰소견란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중 “전회심사”를 “직전 심사”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총 14쪽 중 제3쪽 중 “하드카피”를 각각 “출력물(하드카피)”로 한다.

제78조(「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모사전송(FAX)”을 “팩스”로, “이용하여야”를 “이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79조(「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외자도입”을 “외국자본도입”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계약조건란 중 “기성지불방법”을 “기성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중 “하청단독, 하청합작”을 “하도급단독, 하도급합작”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외화가득액”을 “외화획득금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외화가득액”을 “외화획득금액”으로 한다.

제8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별표 1의2 제2호가목2) 중 “슬라롬(Slalom)주행”을 “슬랄림(Slalom: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과하는 주행)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빨래판로, 장과형로)”를 “(물결모양 도로, 비대칭 도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6의3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단서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14의8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 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절토(切土) 또는 성토(盛土)하는</u>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u>아니할</u>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u>다.</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p> <p>가. (생 략)</p> <p>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p>	<p>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 준)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u> -----</p> <p>----- <u>않을</u> --. -----</p> <p>----- <u>그렇지 않다.</u></p> <p>3. -----</p> <p>-----</p> <p>-----</p> <p>-----</p> <p>-----</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取土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 취토장(흙채취장)----- ----- -----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 3. (생략) 4. 에어백 모듈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생략)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출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나 <u>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u>	-- <u>축하중</u> -----
3.·4. (생략)	--
③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③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부의한</u> 사항	-----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② (생략)	4. -----
③ 삭제	-----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u>공차기준</u> 은 별표 12와 같다.	-----
⑤ (생략)	----- <u>심의에 부치는</u> -----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④----- <u>허용오차기준</u>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u>보존하여야</u> 한다.	-----
1. (생략)	----- <u>보존해야</u> -----.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u>폐기인수증명서수불대장</u>	1.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2. ----- <u>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u>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u>각호</u>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u>탈모상반신</u> 사진 2매	----- <u>각 호</u> -----
②·③ (생략)	----- <u>제출해야</u> -----.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u>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u>	4. ----- <u>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u> -----

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 반신 사진

2. (생 략)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  
-----  
-----  
-----  
-----  
----- 제출해야 -----  
-----

1. -----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  
-----

2. (현행과 같음)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심의한다.

1. 2. (생 략)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② ~ ⑤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3. -----  
-----  
-----  
----- 심의에 부치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63조의2(배송장치 등) ①·② (생 략) ③ 콘크리트펌프의 토출작업 중 에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아웃트리거가 작동되는 <u>구조이 어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배송장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구조여야</u> -----.
제64조(압력계) ① 콘크리트펌프 의 토출압력은 펌프의 토출구에 서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단위 면적당 압력을 말하며, 콘크리 트펌프 차체에는 토출압력을 표 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u>설치하 여야 한다.</u>	제64조(압력계) ① ----- ----- ----- ----- ----- <u>설치해</u> <u>야</u> ----.
제82조(토출압력 등) 공기압축기 는 소정의 토출압력(공기압축기 의 토출부에서 토출되는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말한다)을 충분 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 밸브와 언로더 밸브 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2개 이상 <u>설치하여</u> <u>야</u> 하며, 정확히 작동되도록 조 정되어야 한다.	제82조(토출압력 등) ----- ----- ----- ----- ----- ----- <u>설치해야</u> -----.
제83조(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 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제83조(소음기 등) ① ----- -----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 음기를 <u>설치하여야</u> 한다.	----- -- <u>설치해야</u> -----.
②·③ (생 략) 제93조의2(흡입관) 준설펌프의 흡 입관에는 돌 등 이물질을 제거 하기 위한 이물질제거장치(석취 관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토 출관에는 역류 방지용 역수(逆 水)밸브를 <u>설치하여야</u>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흡입관) ----- ----- ----- ----- ----- <u>설치해야</u> -----.
제100조(와이어로프의 지름) ① ~ ③ (생 략) ④ 권상장치등의 드럼의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맞아야</u> 한 다. 1. 홈의 반지름은 로프 공칭지 름의 0.525배부터 0.65배까지 의 범위일 것. 이 경우 로프 지름의 공차를 고려하여 <u>선정</u> <u>하여야</u> 한다. 2. ~ 4.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00조(와이어로프의 지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 ----- <u>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선</u> <u>정해야</u> --.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0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① (생 략) ②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맞아야</u> 한다.	제110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접점, 단자, 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함은 강판으로 제작되거나 견고한 구조일 것

2. 통전부분과 외함간의 절연상태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한국산업표준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절연효과를 가질 것

3. 통전부분의 외함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표시하거나 이를 적은 이름판을 부착할 것

4. ~ 6. (생략)

제114조의2(풍속계) 타워크레인의 고정된 구조물 중 가장 높은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풍속계를 설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이 되었을 때 이를 조종사가 육안 또는 청각 등으로 쉽게 확인할

1. -----  
-----  
-----  
외부상자는 -----  
-----

2. ----- 외부상자 간 -----  
-----  
-----  
-----  
-----

3. ----- 외부상자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풍속계) -----  
-----  
-----  
-----

1. -----  
-----  
-----  
----- 시각 -----  
-----

수 있는 구조일 것

2. 3. (생략)

제116조(조작회로 등) ① ~ ③ (생략)

④ 타워크레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인입개폐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인입개폐기의 외함에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명칭 및 전원의 정격을 표시한 이름판을 붙일 것

4. (생략)

제119조(펜던트스위치) ①·② (생략)

③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전선은 꼬이거나 무리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보조 와이어 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펜던트스위치의 외함구조가 절연제품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펜던트스위치의 외함은 식별

-----  
2. 3. (현행과 같음)

제116조(조작회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설치해야 -----.

1. 2. (현행과 같음)

3. ----- 외부상자 -----  
-----  
-----

4. (현행과 같음)

제119조(펜던트스위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가해 지지 않도록 -----  
-----  
-----  
-----  
외부상자구조 -----  
----- 않을 -----  
-----.

④ ----- 외부상자는 -----

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1. 2. (생략)

⑤ (생략)

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 6. (생략)

7.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제139조(주제동장치) ①·② (생략)

③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5조(타이어 등) ①·② (생략)

-----  
----- 외부상자의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32조(연료장치)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  
-----

제139조(주제동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직접 눈으로 -----  
----- 구조여야 -----.

제145조(타이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솔리드 타이어는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및 최대적재중량 상태에서 타이어 변형, 열에 의한 균열 및 접촉부의 이격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 (생략)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9. (생략)

10. 무선원격제어기의 외함은 식별하기 쉬운 색상이어야 하며, 방진·방수 등급이 아이피(IP) 65 이상일 것

11. (생략)

③ -----  
-----  
----- 벌어짐 -----  
-----.

④ (현행과 같음)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외부상  
자는 -----  
-----

11.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① -----
1. 삭 제	-----
2. 3. (생략)	-----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3. (현행과 같음)
-----	4. -----
-----	-----

(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 재무상태표 -----
나. (생략)	-----
5. ~ 8.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
1. ~ 3. (생략)	-----
4. 굴토(掘土)·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1. ~ 3. (현행과 같음)
5. ~ 7. (생략)	4. 굴토(땅파기)·정지(땅고르기) -----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 7. (현행과 같음)
1. (생략)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
-----	1. (현행과 같음)
-----	2. -----
-----	-----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  
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  
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  
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  
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  
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  
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  
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  
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가. -----  
-----  
-----  
-----  
-----  
-----  
-----  
-----

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삭 제

다. (생 략)

4. 5. (생 략)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  
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

-----  
-----  
----- 재  
무상태표 -----  
-----

다.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첨부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법인세법」 및 「소득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  
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

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다. (생략)

6. ~ 8. (생략)

③ (생략)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생략)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생략)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첨부해야 -----.

1. -----  
-----  
분명하게 적힌 -----  
-----

2.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 6. (생략)

③ (생략)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3. (생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략)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 분명하게 적힌 -----  
-----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비계(飛階) : -----  
-----  
-----

2.·3.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생략)

3. (생략)

③ ~ ⑦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  
-----  
-----  
-----  
-----  
-----  
-----  
-----  
-----  
-----  
-----  
-----  
-----  
-----  
-----  
-----  
-----  
-----  
-----

----- 분명하게 적어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 (생략) ②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u>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u>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통재기둥(通材기둥: 이음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기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u> ----- ----- <u>그렇지 않다.</u>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 (생략) ②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 [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 (생략)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대린벽(對隣壁: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제35조(개구부) ①·② (생략) ③ 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	제35조(개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u>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u>	----- ---- <u>위 인방(引枋: 문이나 창의 아래나 위로 가로질러 설치하여, 상부 무게를 받치도록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해야</u> -----.
④ (생략)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 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u>자중</u>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u>아니할</u>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u>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 ----- ----- <u>자체중량</u> ----- ----- ----- <u>않을</u> ----- ----- <u>제거해서는 안 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

----- 해당 -----

----- 배관해야 -----.

7. 먹는물용 -----

제20조(피뢰설비) -----

----- 설치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 3. -----

----- 동선(銅線) -----

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 7. (생략)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생략)

-----

4. ~ 7. (현행과 같음)

8. -----

-----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p>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u>망입유리</u>로 된 것</p> <p>7. ~ 10. (생략)</p> <p>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 (생략)</p> <p>②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u>안벽</u>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p>	<p>제3조(내화구조)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p> <p>7. ~ 10. (현행과 같음)</p> <p>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안쪽벽</u>-----  <u>해야</u> -----.</p>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u>굴토공사</u>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 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③----- ----- <u>굴토(땅파기)공사</u> ----- ----- -----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 ⑤ (생 략)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 ----- ----- <u>총괄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 (생략)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u>첨부해야</u> ----- ----- <u>확인해야</u> ----- ----- <u>않는</u> ----- ----- <u>해야 한다.</u>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2. (생략)	3. ----- <u>재무상태표</u> -----
3. 직전 회계연도의 <u>대차대조표</u>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u>대차대조표</u> 를 말한다)	----- <u>재무상태표</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생략)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u>첨부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u>확인하여야</u>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u>하여야</u> 한다.	② ----- ----- <u>첨부해야</u> ----- ----- <u>확인</u> ----- ----- <u>인해야</u> ----- ----- <u>않는</u> ----- ----- <u>해야</u> ----- ----- <u>한다.</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직전 회계연도 <u>대차대조표</u>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 <u>재무상태표</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골재 품질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① (생략)	제10조의2(골재 품질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p>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u>정부노임단가</u>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② (생 략)</p>	<p>기준 등) ① ----- ----- ----- <u>정부임금단가</u>----- ----.</p> <p>② (현행과 같음)</p>
--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 기준란 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용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5. ----- <u>문주(문기둥)</u> -----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u>감안하여</u>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고려하여</u> ----- ----- ----- ----- ④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 (생략) ②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u>참작하여야</u>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u>감안하여</u>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생략) 나. (생략)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생략)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각 호</u> ----- -- ----- ----- ----- <u>참작해야</u> -----. 1. ----- 가. ----- (1) ----- ----- ----- ----- <u>고려하여</u> -----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결실기에 있는 과  
수 : 식재상황·수  
세·잔존수확가능  
연수 및 수익성 등  
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8조(묘목의 평가) ①·② (생  
략)

③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  
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  
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  
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  
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  
지로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 (생  
략)

② 지장물인 조립된 용재립중

(1) -----  
-----수  
세(樹勢)-----  
-----  
-- 고려하여 -----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묘목의 평가)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않은 -----  
----- 고려한 -----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 (현행  
과 같음)

② ----- 용재립(用材)

별기령에 달한 용재립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립  
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  
정)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  
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  
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  
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  
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  
격, 제레비, 노임 5인분(합장  
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  
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  
다) 및 운구차량비

2. ~ 4. (생 략)

②·③ (생 략)

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  
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중 -----  
-----  
-----  
-----  
----- 보상해야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  
정) ①-----  
-----  
-----  
-----  
-----  
-----  
-----  
-----  
-----  
-----  
-----

1. -----  
-----  
----- 임금 -----  
-----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은 -----

----- 임금단가 -----

12(월)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② (생 략) ③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u>작성하여</u> <u>야</u> 한다. 1. (생 략) 2. 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 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 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생 략) 나. 축점마다의 중심선의 지 면, 시공기면, <u>성토</u> 의 높이 및 <u>절토</u> 의 깊이  3.·4. (생 략) ④ (생 략)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작성해야</u>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성토(흙쌓기)</u> -- <u>절토(땅깎기)</u> ----- ----- 3.·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② (생 략)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 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 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바. (생 략) 사. 정격 <u>통달거리</u> 아.·자. (생 략) ④ (생 략)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u>도달거리</u> 아.·자.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격 <u>통달거리</u> 나. ~ 마. (생 략) ②·③ (생 략)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u>도달거리</u> 나. ~ 마.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 ----- ----- ----- ----- ----- ----- ----- ----- ----- -----
1. 교량: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1. -----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관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관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 ----- ----- ----- ----- ----- ----- ----- ----- ----- -----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해야 -----.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1. ----- -- <u>표대</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u>표대</u> ----- ----- ----- <u>실시</u> ----- ----- <u>해야</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도로원표)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23조(도로원표) ① ----- ----- <u>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도로대장) ① ~ ③ (생략)	제24조(도로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u>보관</u> 하여야 한다.	④ ----- ----- <u>보관</u> ----- ----- <u>야</u> -----.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1. <u>부책(簿冊: 내용을 자세히 적은 별도 문서나 장부 등을 말한다)</u> -----

2. (생략)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변속차로) ----- ----- 설치 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 -----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u>측대</u> 를 설치할 것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 ----- ----- 설치해야 ----. 1.·2. (현행과 같음) 3. ----- ----- <u>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로) ① ~ ④ (생략)	제10조(차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 ----- ----- ----- ----- 앞 지르기차로 ----- -----.
제30조(배수시설) ①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배수시설) ① ----- ----- ----- ----- 도수로(차도에 모인 물을 차도 밖으로 빼내는 수로를 말한다) ----- ----- 설치해야 ----- 설치해야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 ----- -----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겹지체계(檢知體系)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설치해야 ----- ----- ----- 겹지 체계(도로 일정 지점에서 차량의 존재나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의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글자의 표기)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글자의 표기) ① ----- ----- --- 함께 적는 ----- --- . ----- --- 함께 적지 않을 ----- ----- ---- 함께 적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형식 및 장소) ① (생략)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형식 및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u>홀기동식, 겹기동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u> 으로 구분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u>선정</u> 하여야 한다.	④ ----- ----- 선정해야 ----- -----.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u>절토면</u>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1. ----- ----- ----- ----- <u>절토면(땅깎기를 한 면을 말한다)</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가로등· <u>전주</u> ·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4. ----- ----- ----- <u>않은</u> ----- ----- <u>전봇대</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 라. (생략)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 고려하여 -----

----- 해야 -----.

가. -----

-----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 고려하여 -----

----- 관리해야 -----

한다.

가. ~ 다. (생략)

4. (생략)

② ~ ④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 ----- 결정해야 -----.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 라. (생략) 4. (생략)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 -----. 1.·2. (현행과 같음) 3. ----- ----- 고려할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해당 ----- ----- 고려한 ----- ----- 해당 ----- ----- 따라 ----- --

6. ~ 14. (생략)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략)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생략)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 8. (생략) ③ ~ ⑤ (생략)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 14. (현행과 같음)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잔교(구름다리)----- -----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
--	---

1. ~ 3. (생 략)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생 략)

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7. (생 략)

② (생 략)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1. ~ 3. (현행과 같음)

4. -----  
-----  
----- 고려하여 -----  
-----

5. (현행과 같음)

5의2. -----  
-----  
-----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 -----  
-----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고려한 -----  
-----  
-----

3. ~ 15. (생 략)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생 략)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생 략)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

3. ~ 15. (현행과 같음)

16. -----  
-----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  
-----  
----- 각 호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u>불투수면</u> 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7. ----- ----- <u>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u> ----- ----- -----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7. 8. (생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u>설계축하중</u> ----- ----- ----- -----.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u>설치하여야</u> 한다. 1. 안전펜스 2. (생략) ②·③ (생략)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 ----- ----- ----- ----- -- <u>설치해야</u> ----. 1. <u>안전올타리</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2. (생략) 3. 하천시설의 <u>수문문비(水門門扉)</u>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u>여수로(餘水路)</u> 5. 6. (생략) 7. 항만시설 중 <u>갑문문비(閘門門扉)</u>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수문의 문짝</u> 4. ----- <u>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u> 5. 6. (현행과 같음) 7. ----- <u>갑문의 문짝</u> ----- ----- -----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 ----- ----- -----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u>대차대조표</u> 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생략) ② (생략)	----- ----- ----- ----- ----- ----- <u>제출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4. ----- <u>채무상태표</u>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u>대여책임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u> 5. ~ 7. (생 략)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u> 5. ~ 7. (현행과 같음)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② (생 략)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u> 및 손익계산서 2. 3. (생 략) ④·⑤ (생 략)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첨부해야</u> ----- ----. ----- ----- 1. ----- <u>재무상태표</u> ----- 2.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u>설치하여야</u> 한다. 1. ~ 3. (생 략)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u>축거</u>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6. (생 략)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 ----- ----- <u>설치해야</u>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축간거리</u> ----- ----- ----- 5. 6. (현행과 같음)
제7조(여객용 장소) ① (생 략)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u>방책·구획선 기타</u>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u>구분하여야</u> 한다.	제7조(여객용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울타리·구획선 또는 그 밖의</u> ----- ---- <u>구분해야</u>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협(藥莢) 각 20개 이내

약통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① (생략)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u>입회하여야</u> 한다.	② ----- ----- ----- ----- ----- ----- ----- <u>참관</u> <u>해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일출전·일몰후의 화약류 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u>아니하고는</u>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u>탁송</u> 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제4조(일출전·일몰후의 화약류 취급) ----- ----- <u>않고</u> 는 ----- ----- ----- ----- ----- ----- ----- <u>탁송</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용의 뇌관 또는 뇌관부 <u>약</u>	4. ----- <u>화</u>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갱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갱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갱정(고침)----- 기재해야 ----.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 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철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 편철해야 ----- 편철항목 사이----- 부기해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 ~ ⑤ (생략)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출납-----관리해야-----.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1. -----축하중-----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생략)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u>변경하여야</u>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u>명기하여</u> 신청자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② ----- ----- ----- ----- <u>변경해야</u> ----- ----- ----- <u>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u> ----- -----.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 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u>입회하에</u> 파기할 것	2. ----- ----- <u>참관하</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u>입회하에</u> 파기할 것	3. ----- <u>참관하</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u>받고자</u>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u>제시하여야</u>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u>경우에 한하여</u> 해당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 ----- <u>받으려는</u> ----- ----- ----- <u>제시해야</u> ----- ----- ----- <u>경우에만</u> ----- <u>첨부해야</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	3. -----





일 것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u>아니하고</u> 물품(예비부분품 및 <u>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u> )을 적재하지 <u>아니한</u>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u>만재하고</u>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 64.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않고</u> ----- ----- <u>공구, 그 밖의</u> ----- ----- -- <u>않은</u> ----- ----- <u>가득 채우</u> <u>고</u> ----- ----- -----. 2. ~ 64. (현행과 같음)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u>축중은 10톤</u> , <u>윤중은 5톤</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 <u>축중</u> 및 <u>윤중</u> 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 ----- ----- ----- --- <u>축하중</u> ----- -----. ②----- --- <u>축하중</u> ----- -----.



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  
(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  
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  
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  
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  
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6. ~ 12. (생 략)

② 초소형자동차에는 주제동장  
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  
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  
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

적합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맨  
눈-----  
-----.

6. ~ 12. (현행과 같음)

② -----  
-----  
-----  
----- 적합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맨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6. ~ 10.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전기식(제동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경우를 말한다) 주제  
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  
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  
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  
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  
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  
니할 것

3. · 4. (생 략)

⑧ ~ ⑭ (생 략)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  
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  
용자동차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원  
차단 기능을 갖출 것

② (생 략)

눈-----  
-----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단락(斷絡)이 발생하  
지 않을 --

3. · 4. (현행과 같음)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  
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퓨즈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 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생략)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  
-----  
----- 설치  
----- 해야 -----.

----- 그렇지 않다.

1.·2. (현행과 같음)

3. -----  
-----  
----- 표시해야 -----.  
----- 맨눈 -----

----- 그렇지 않다.

다.

4. ~ 7. (현행과 같음)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 -----  
-----  
-----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변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생략)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라. (생략)

3.·4. (생략)

②·③ (생략)

제46조(군용화 장치) ① 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

----- 적합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않는 재질의 칸막이벽으로 -----.

----- (칸막이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

다.·라.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군용화 장치) ① -----  
-----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위치 근처에 <u>부착하여야</u> 한다. ② (생략)	----- <u>부착해야</u>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u>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구조도(기둥, 보, <u>슬라브</u> 및 기초) 6.·7. (생략) 8. <u>창호도</u>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 ----- ----- ----- ----- <u>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u> 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u>슬라브</u> ----- ----- 6.·7. (현행과 같음) 8. <u>창호도(창문 도면)</u>

지도도식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u>주곡선</u> , <u>간곡선</u> , <u>조곡선</u> 및 <u>계곡선</u>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조(등고선) ----- ----- <u>주곡선</u> (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u>간곡선</u> (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u>조곡선</u> (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u>계곡선</u> (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u>도엽명</u> · <u>도엽번호</u> · <u>인접지역 색인</u> · <u>행정구역 색인</u> · <u>범례</u> · <u>발행자</u> · <u>편집연도</u> · <u>수정연도</u> · <u>인쇄연도</u> 및 <u>축척</u> 등을 표시한다.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 ----- ----- ----- <u>도엽</u>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u>명칭</u> · <u>번호</u> , <u>인접지역색인</u> ----- -- <u>수정연도</u>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u>계도</u> 및 홍보 2. 3.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교육</u> ----- -----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슬랙)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u>고정축거</u> (固定軸距) 등을 고려하여 궤도에 과도한 횡압(橫壓)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궤도에 과도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3조(슬랙) ----- ----- <u>고정축간</u> <u>거리</u> ----- ----- ----- ----- ----- ----- <u>그렇지 않다.</u>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 야 한다. 1.·2. (생 략)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출발하고 여객이 안전 하고 자유롭게 이동·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u>대합실</u> , 피 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 로 점검할 것 4.·5. (생 략) ② (생 략)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u>대기실</u> ----- ----- -----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 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대용(代用)폐색방식 : 통신식 · <u>지도통신식</u> · 지도식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 ----- ----- 1. (현행과 같음) 2. ----- - <u>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u> ----- -----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 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u>시행하여야</u> 한다. 다 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 1. (생 략)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u>지도격시법</u> 나. (생 략)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 ----- ----- ----- <u>시행해야</u> ----- ----- ----- ----- <u>그렇지 않다</u>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u>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u> 나. (현행과 같음)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입환 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u>육안</u> 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u>입환</u> <u>전호하여야</u> 한다.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 ----- ----- <u>맨눈</u> ----- ----- <u>입환</u> <u>전호해야</u> -----.

1. ~ 3. (생략)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① (생략)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u>피하여야</u>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만곡부(彎曲部): <u>굽은 구간을 말한다</u> ----- ----- ----- <u>피해야</u> -----. ③·④ (현행과 같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문서 또는 <u>전문(電文)</u> 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u>하여야</u> 한다.	제16조(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자통신문</u> ----- ----- <u>해야</u> -----.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제출</u> <u>하여야</u> 한다.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 ----- ----- ----- ----- ----- ----- ----- ----- <u>제출</u> ----- ----- <u>해야</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u>대차대조표</u>	6. ----- <u>재무상태표</u>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 ----- ----- ----- ----- ----- ----- ----- ----- <u>않는</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최대 <u>실속속도</u>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2. --- <u>실속속도</u> [ <u>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u>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조종석은 <u>여압(與壓)</u> 이 되지 아니할 것	5. ----- <u>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유지</u>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6조(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6조(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공기 발동기의 흡입 또는 후류(後流)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3. ----- <u>후류(後流: 뒤쪽 바람)</u>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에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 -----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	<u>표시해야</u> ----- 가. ----- ----- <u>직각으로 교차하는</u>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

	공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공기) ----- ----- ----- ----- -----.
1.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1. <u>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발동기</u> ----- -----	1. <u>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발동기</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 ----- ----- -----.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 ----- ----- -----.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1. ----- ----- <u>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 -----</u> <u>않는</u> ----- -----	1. ----- ----- <u>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 -----</u> <u>않는</u>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접근(mi ssed approach), 복행(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manoeuvre)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10조(구급용구 등)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

-----  
-----  
----- 회피기동(escape manoeuvre: 장애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력·경로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구급용구 등) -----  
-----  
-----  
-----  
-----  
-----  
----- 손확성기(메가폰)-----  
-----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  
-----  
-----

는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 아. (생략)  
자. 공항 운영 최저기상치(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차.·카. (생략)

2. (생략)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2. (생략)

3. 추월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

-----  
-----  
-----

1. -----  
-----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공항 운영 최저기상기준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차.·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  
-----  
-----  
-----

1.·2. (현행과 같음)

3. 앞지르기하는 -----  
-----  
않도록 -----

을 유지할 것

4. 5. (생략)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5. (생략)

6. 비행로, 교통장주(交通長周),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 14. (생략)

② (생략)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

4. 5. (현행과 같음)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정해진 -----

-----

7.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

-----

-----

-----

----- 양보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

-----

3. ~ 5. (생략)

② (생략)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 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략)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① ~ ③ (생략)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월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법 제67조에 따라 수상에서 항공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양보해야 -----.

-----

-----

-----

앞지르기해서는 안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앞지르기(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앞지르기를 -----

----- 앞지르기당하는 -----

----- 통과해야 -----.

-- 앞지르기하는 -- 앞지르기당하는 -----

----- 안 -----.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

-----

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사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추월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할 것

5.·6. (생략)

제171조(활공기 등의 예항)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생략)

나. 예항중 이탈의 시기·장소 및 방법

다.·라. (생략)

3. ~ 6. (생략)

② (생략)

-----  
-----  
-----  
----- 이동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앞지르기하려는 -----  
----- 앞지르기할 -----

5.·6. (현행과 같음)

제171조(활공기 등의 예항)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예항중(항공기 등을 끌고 비행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라.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  
-----  
-----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행해야 -----.

----- 그렇지 않다.

1. (현행과 같음)

2. 천음속(遷音速: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 ---

④ -----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② (생략)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空對地通信)을 유지·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0조(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생략)

②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을 유지·경청하고, 제191조에 따라 위치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

운항해서는 안 -----.

⑤ (현행과 같음)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중 대 지상 통신-----

----- 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80조(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는 -----

공중 대 지상 통신-----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①·② (생략)

③ 조종사는 해당 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치 이상인 경우에만 이륙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⑨ (생략)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전화·서류·전문(電文)·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 ⑦ (생략)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

----- 해야 -----.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최저이륙기상기준값 ----- 이륙해야 ----- . ----- 그렇지 않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통신문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생략)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를 운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기상예보 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이하인 목적지 헬기장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 않는 -----

----- 않은 -----

----- 시작해서는 안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운고-----

-----

나. (현행과 같음)

⑤ -----

-----

----- 지정해야 -----

1.·2. (현행과 같음)

3. -----

----- 최저기상기준값 -----

-----

-----

port). 이 경우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는 목적지 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는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은 교체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 사용 가능시간과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

----- 최저기

상기준값은 -----

최저기상기준값 이상이어야 -----

----- 최저기상기준값은 -----

----- 최

저기상기준값 이상이어야 -----

⑥ -----

-----

----- 최

저기상기준값-----

----- 지

정해야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90조(통신) ① -----

----- 공중 대 지상 -----

----- 경청해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3조(곡예비행) -----

-----

호와 같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u>실속(失速)시켜</u> 하는 비행	4. ----- ---- <u>실속시켜</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3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 ④ (생략)	제23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및 <u>항공기간 분리최저치</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 <u>항공기간 분리최저치(최소 분리 간격)</u> ----- -----.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생략)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u>저시정</u>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II) 또는 제3종(Category III)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② ----- <u>저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가 짧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 -----

대하여 제한을 <u>하여야</u> 한다.	----- <u>해야</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 ① ~ ④ (생략)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는 별표 40과 같다.	⑤ ----- -----.
1. 제1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u>완제(完製)형태</u> 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1. ----- ----- <u>완제기 형태</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종: 경량항공기가 <u>완제형태</u> 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3. ----- <u>완제기 형태</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량항공기의 종류로 <u>한정하여야</u> 한다.	----- ----- <u>한정해야</u> - -----.
1. <u>타면조종형비행기</u>	1. <u>조종형비행기</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① 법 제 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 사고등의 발생통보는 구두, 전 화, 모사전송(FAX),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 한 방법을 <u>이용하여야</u> 한다.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① ----- ----- ----- -- <u>팩스</u> ----- ----- ----- <u>이용해야</u> -----.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 번호, <u>모사전송번호</u> , 인터넷 홈 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② ----- --- <u>팩스번호</u>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② (생 략)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 다. 1. ~ 3. (생 략) 4. 운송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 기(終期) 5.·6. (생 략) ④ (생 략)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